

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2. 11(월) / 총 3매(본문2)
담당 부서	대중교통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기대, 사무관 김종욱, 주무관 안승현 • ☎ (044) 201-3832, 3827
보 도 일 시		2019년 2월 12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11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시외버스 정기·정액권 도입으로 이용객 부담 완화한다

12일부터 「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·요금 등 조정요령」 개정안 행정예고

- * (사례1)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A씨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국내여행 계획하면서, 전국 방방곡곡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나 요금이 다소 부담되어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.
- * (사례2) 최근 인사발령으로 천안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B씨는 이동수단 선택과 관련하여 고민 중으로, KTX는 높은 요금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시외버스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.

- A·B씨와 같은 시외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정기권·정액권 발행 등 버스 요금 할인 사업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시외버스의 정기권·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「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·요금 등 조정요령」 개정안을 마련하였다.
 - 이에 따라 「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·요금 등 조정요령」 개정내용에 대해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.
- 이번에, 개정되는 「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·요금 등 조정요령」은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·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.

○ 구체적으로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(월~목, 월~금, 금~일 등)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 (free-pass)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.

- 또한,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(100km 미만)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.

○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,

-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·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“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·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월 23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

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

전화: 044-201-3832, 팩스 044-201-5582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김종욱 사무관(☎ 044-201-383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